

영농조합법인 설립 어떻게 하나? (Ⅳ)

영농조합법인 정관 예<전문>

- 홍 보 부 -

◇...지난호에 이어 영농조합법인 정관 예<전문>의 제49조~설립사례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

<10월호 p.75에서 계속>

제 6 장 회의의 운영

제 49조(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50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월에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는 총회 소집 5일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2. 제 2 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3. 감사가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 5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해산·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책정과 변경
6. 사업보고서, 결산서, 이익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
9. 임기중 임원의 해임

<비 고>

조합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이 필

요한 사항은 추가로 열거한다.

제 52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종족수) ① 총회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가입 승인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당사자를 제외한 조합원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제명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④ 제 1항의 총회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 53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성년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4조(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 및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 55조(회의내용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 7조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 7 장 해 산

제 56조(해 산)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의결할 경우
2. 파산한 경우

3.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후 1년이내에 5인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

[비 고]

조합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4호부터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제 57조(청산인) 본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8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인은 그 취임후 3주일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登記하여야 한다.

[비 고]

조합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59조(청산재산의 처리)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3. 외부증여금 등은 전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창립 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농지를 출자하는 조합원의 성명, 출자대상 농지 및 평

가액과 농지 출자좌수(15조 제 5항 관련)

조합원의 성명	출자한 농지의 표지			평가액	농지출자 좌 수
	지번	지목	면적		

정관작성시 유의사항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을 작성할 경우에 다음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람.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례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항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조합원의 자격(제9조 제 1·2·3호), 탈퇴(제13조), 출자(제15조 제1항, 4항), 해산(제56조), 청산인의 직무(제58조)

②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규정하되 그 내용은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

목적(제2조), 사무소소재지(제3조), 사업(제5조),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제10조, 제13조, 제14조),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최고한도(제15조),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계산(제 27조),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제36조, 제37조), 회계연도와 회계(제 4장),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

출 및 해임(제 5장, 제6장)

③ 상기 ① ②이외의 정관례에서 정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서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2. 영농조합법인 설립사례

조 직 명	오촌영농조합법인		
설 립 일 자	'91.2.7		
사무소소재지	충남예산군 오가면 오촌리	전화	0458-32-7511
조 합 원 수	11명(오촌리 거주농민)	대표자	조 홍 구
조 직 동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의 일손부족에 대처 농기계이용도 제고와 생산비 절감 농산물가공판매 및 창고사업 운영 		
출자	현금	850천원	
	농지	4,610천원(논, 밭)	
현 황	농기계	50,850천원(트랙터2대, 콤바인2대, 이앙기1대등)	
	기타		
계	56,310천원		
업 무 구 역	예산군 오가면 일원		
주 요 사 업 ('91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영사업 : 1.5ha(벼등) 농작업수탁 : 89ha, 논 : 68ha, 밭 : 21ha 		
운영 방식	사무실	벽돌스레트 건물자재건립	
	직원	없 음	
	노동력 조 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사 : 조직원중 조달 보조노동력 : 조직원 및 외부조달 	
작업료 결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법인이 단독 결정 - 관내노임, 지역특성감안 		
동 협 준 조합원 가입	가입예정		
특 기 사 항			

●

